

제417회 국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8월26일(월)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2023회 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 보건복지부 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 질병관리청 소관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60)
-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77)
-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88)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53)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14)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80)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89)
-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76)
-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11)
-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55)
-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93)
-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04)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08)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93)
-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결핵예방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21)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79)

-
2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13)
 2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75)
 2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822)
 25.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900)
 2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76)
 2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73)
 2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9.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16)
 3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97)
-

상정된 안건

1. 2023회 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11
 가. 보건복지부 소관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다. 질병관리청 소관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60) ... 11
3.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77) 11
4.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88) 11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53) 11
6.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14) 11
7.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80) 11
8.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
9.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89) 11
10.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76) 11
11.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11) 11
12.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55) 11
13.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93) 11
14.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
1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04) 11
1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08) 11
1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
18.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93) 11

19.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결핵예방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21)	11
2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79)	11
2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13)	11
2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75)	11
2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
2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822)	11
25.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900)	11
2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76)	11
2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73)	12
2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
29.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16)	12
3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97)	12

(10시23분 개의)

○위원장 박주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회계연도 결산과 법안심사소 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하여 소위원장으로부터 심사 결과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주민 예.

○강선우 위원 위원장님, 이번 국회 들어 처음으로 법안소위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 21대에도 4년 내내 보건복지위를 했었는데요. 전문위원 검토서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가장 공신력 있는 조사·분석 자료 중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법안소위에서 이 국회 전문위원이 검토한 이 검토보고서 내용을 뒤집을 만한 결정적인 주장이 제기되지 않는다면 대부분은 이 검토보고서를 많이 참고를 합니다. 그리고 안건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관련 법도 있습니다.

국회법 42조에는 위원회 전문위원과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국회사무처에서 만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작성 및 배부에 관한 규정 안에서도 검토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객관성·균형성·전문성·정확성·명료성 등 5개 원칙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때 말하는 균형성은 해당 안건과 관련된 각계의 의견을 균형 있게 고려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난 21대 국회와 달리 이번 국회에서 이 법안 검토보고서가 과연 최소한의 정치적 중립 유지 의무를 지키고 있는지 그리고 최소한의 기계적 균형성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께서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발의한 장애인활동 지원법 일부개정안이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22년, 그러니까 21대 국회 때 작성된 검토보고서인데요. 8개 문단 중에 부정 의견에 두 문단 정도 소요가 됩니다. 부정 의견은 한 페이지 안 되고요 그리고 신중검토 의견도 복지부 하나입니다.

그런데 거의 비슷한 법안에 이번에 검토된 것 볼게요. 24년 7월에 작성된 검토보고서보시면 검토보고 8개 문단 중에 부정 의견 4페이지, 절반이 넘습니다. 무려 네 문단에 걸쳐서 아주 정성스럽게 할애를 합니다. 그리고 21대 때는 신중검토 의견이 복지부 하나였는데 이번에 신중검토 의견은 복지부 외에 지자체, 경남 밀양시 의견까지 수렴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 전에 전혀 없던 스웨덴·호주 해외 사례까지 찾아서 비판을 합니다.

위원장님, 법안 검토보고서 당연히 열심히 써야 하고 충실히 써야 됩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정치적 중립성과 균형성은 지켜야지요. 지난 국회 검토보고서를 보면 이 해당 법안은 논의가 계속 필요한 법안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 국회 검토보고서를 보면요 동일한 취지의 법안인데 애초에 발의 자체가 되지 말았어야 할 수준의 법안으로 보일 지경입니다.

제가 지금 예를 든 이 1건 외에도 이번에 올라온 상당수의 법안 검토보고서가 정부 입장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습니다. 최소한의 기계적인 균형은 맞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존경하는 위원장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하 공무원이 향후 국회법과 국회사무처 규정에 따라 최소한의 균형성과 정치적 중립의 의무는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강력히 경고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을 저희 위원장실에 전달을 해 주시면 보고 제가 수석전문위원님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 간사님.

○**김미애 위원** 다른 내용입니다.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들의 피로가 쌓이는 등 어려움이 뽑시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전공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소위 전담간호사는 이번 사태에서뿐 아니라 지난 20여 년간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서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해 왔고 법적 보호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개선 등 의료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해서라도 진료지원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할 필요가 매우 높습니다.

지난 21대·22대 국회에서도 여야가 이 부분에 있어 만큼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지난 13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간호사법을 8월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하자는 데 뜻을 모았고 현재 국민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간호법만큼 우선되는 민생법안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지난달 22일 야당의 요청으로 간호사법 논의를 위한 원 포인트 법안소위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목요일, 22일 법안소위에서 간호법은 합의되지 못했습니다. 논의는 제한적이었고 야당의 태도도 아쉽지만 제 기대와 달리 매우 소극적이라고 봤습니다. 신속한 재논의를 위해 지난 금요일 야당 간사께 소위 개최를 요청했지만 이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몹시 유감입니다. 간호법은 정치적 흥정 대상이 될 수 없고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식의 정쟁거리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같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압니다.

간호법은 의료 비상시기에 혼신하고 계신 간호사들이 안심하고 진료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수 법률입니다. 게다가 아시다시피 29일 날 파업까지 예고하고 있는 마당입니다. 파업 요구하는 데 주된 사유 중의 하나가 PA, 이른바 진료지원 전담간호사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국회가 할 일입니다. 여야를 떠나서 국회가 이 입법을 최선을 다해서 최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제가 여기 계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위원장님께 제안드립니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대부분을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이 PA 법제화하는, 법적 근거 마련해야 하는 이 법을 오늘이라도 심사해 줘서 이 상임위에서 논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박주민 강선우 간사님, 아니면 남인순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어떻게……

○남인순 위원 강선우 간사님이 정리하세요.

○위원장 박주민 먼저 하실래요?

○남인순 위원 아니, 정리해 주세요.

○위원장 박주민 예, 그러면 강선우 간사님.

○강선우 위원 간호법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진작에 제정이 됐을 법이지요. 그 당시에는 거부권 사용해 놓고 이제 와서 지금 의료대란 관련해 가지고 본인들이 급하다고 해 가지고 야당이 소극적인 태도로 임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거부권 사용하지 않았으면 그 당시에 제정이 됐고 PA 부분만 개정을 했으면 될 일이에요, 이렇게 의료대란이 났으면, 본인들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지금 의료개혁을 하겠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행정업무를 했다면. 이제 와서 지금 야당 탓을 하고 있다? 이것은 굉장히 유감을 표합니다.

○위원장 박주민 마치는 겁니까?

○강선우 위원 예.

○이수진 위원 위원장님!

○김미애 위원 위원장님, 오늘이라도 심사를 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위원장 박주민 김미애 간사님도 아시겠지만 이 회의 전에 양당 간사님들과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당 간사님들께서 신속하게 논의를 해 주시면 최대한 저는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해서 빨리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김미애 위원 8월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주민 그 부분은 양당 간사님들에게 달려 있겠지요. 그러니까 지금 쟁점이 없는 게 아니라 쟁점이 분명히 남아 있고 상당히 접근하는 것으로 저도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 간사님께서 좀 더 논의에 힘을 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PA 법제화하는 것,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서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다……

○위원장 박주민 간사님, 이 부분은 오전에 이미 말씀을 나누셨기 때문에 원활한 대화를 위해서라도 지금 이 공개된 자리에서 계속 두 분이 공방을 하시는 게 좋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상훈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안상훈 위원 예.

○위원장 박주민 그러면 발언하십시오.

○안상훈 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도 이 문제는 여야를 떠나서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우리가 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청문회도 했고, 야당이 일방적으로 청문회를 여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다 들어와서 임했습니다. 그리고 PA 문제를 비롯해서 간호법, 간호사법 양당이 낸 안에 대해서 의료 현장 문제 풀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따로 법안소위를 오랫동안 진행했고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가 법안 내용을 다 검토를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전향적으로 지금 접근을 한다면 대승적으로 충분히 신속하게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29일 보건의료노조 파업까지 예상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 문제만큼은 우리가 지금 오늘 다른 어떤 법안보다도 더 시급한 상황이라고 보고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주민 아까 남인순 위원님이 먼저 발언 기회를 요청하셨던 거예요.

남인순 위원님.

○남인순 위원 간호법 관련해서는 21대 국회에서 당시 대통령후보들, 윤석열 대통령후보 시절에도 간호법 제정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는 그래도 합의를 해서 통과했고 법사위원회에서 통과를 안 시켜 줘서 다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또 5분의 3 표결로 해서 통과시켰던 것은 다 아는 과정일 것입니다. 그만큼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다 했고요. 그런데 그 내용을 그대로, 보건복지위원회 합의로 처리된 내용을 그대로 저희가, 본회의에서 통과를 했는데 그것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간호법을 다시 22대 국회에 와서 논의하면서는 거부권 행사가 안 돼야 되겠지요. 그러면 거부권 행사가 안 되려면 지난번 21대 때 합의됐던 내용, 그 내용이 기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의료대란 속에서 PA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제도 안에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방향은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도를 만들 때는 또 이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에 어떻게 이것이 의료 현장에 영향을 미칠지를 또 심도 깊게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 논의를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소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제기가 되고 또 어떻게 관리가 되느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점들을 보다 심도 깊게 논의하는 것이 당연히 국

회가 해야 될 책무입니다. 지금 갑자기 우리가 통과를 안 시켜 준다 이런 식의 프레임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정말 저는……

○김미애 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심도 있게 논의하자는 거지요.

○남인순 위원 논의를 했습니다, 분명히. 저는 그 1법안소위의 위원으로서 정말 심도 깊게 논의를 했고 고민을 하고 있고 관련한 단체들 의견 듣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갑자기 오늘 아침에 여야 간사 간에 논의도 있다고 해서 저희는 굉장히 전향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당 간사님께서 그렇게 야당 탓을 하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것 상당히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아시게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을 바로잡아 주시고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신다면 원만하게 우리가 의사진행하려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간사님이 문제 제기하시는 내용은 참 적절치 않았다. 같이 다 심사를 해 놓고 왜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고요. 어떤 지시가 내려왔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김미애 위원 지시 없습니다. 제가 그러면 말씀을 드릴 기회를 주십시오.

○남인순 위원 지시가 내려오지 않았으면, 그동안에 저희 보건복지위원회가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논의했던 그동안의 관행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회의에서만 회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의견을 듣습니다, 위원들이 다. 그런 상황 속에서 판단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폄하하는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주민 이것을 계속 공방하는 것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활하고 신속한 논의를 하는 것에 저는 도움은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가 지금 간호법에 대해서 늦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다만 이미 한 번 재의 요구가 된 법안이고 또 재의 요구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발의된 다음에 그 법이 현장에서 작동이 돼야 되겠지요. 이해관계에 있는 여러 단체들이 얹혀 있는 법이다 보니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만들 경우에 현장에서 작동이 안 될 또 오히려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라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김미애 간사님을 포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고 논의를 하고 계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 누구보다도 또 어느 상임위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유연하게 상임위를 운영하겠다는 약속의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원칙하에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신뢰를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현장에서, 공개된 자리에서 더 공방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주영 위원님, 특별히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주영 위원 박주민 위원장님께서 잘 정리해 주셔서, 비슷한 취지이기는 한데 지금 간호법을 이렇게 급하게 통과시키려는 것에 있어서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법이고 21대부터도 아주 이슈가 되었던 법임에도 이것이 민생의 영역을 넘어서 정치의 영역으로 이미 전환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급하게 진행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봄에 있어서 우리가 간호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법적으로 보호해 주기 위한

것인지 혹은 법으로만 제정해 놓고 법 안에서 가능하니까 무엇이든 시키는 대로 하라는 법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궁극적인 법의 취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이 간호사 내부에서도 지금 이 법이 악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고 특히 전문간호사단체, 간호조무사단체, 의료기사 그리고 물리치료사 등 이해관계에 대한 직역들이 아직 다 논의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한쪽에서 무조건 양보할 테니 이것을 신속하게 통과시키자는 것은 과연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 의견 모두 존중하지만 더 다양적인 논의가 있어야 하고 이렇게 급하게 통과시키는 것이 민생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주민 이 논의를 계속하는 것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면 최보윤 위원님 말씀 듣고 강선우 간사님 말씀 듣고……

○이수진 위원 위원장님, 저는 안 시키고 빼고 넘어가십니까?

○위원장 박주민 만약에 모든 분들이 한 말씀씩 다 하시는 게……

○이수진 위원 아예 논의를 끝내시든지 다 시켜 주시든지 하시지요.

○위원장 박주민 그러면 강선우 간사님은 여러 차례 하셨으니까 오히려 이수진 위원님께 기회를 드리는 식으로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최보윤……

○강선우 위원 저 마지막 마무리할게요.

○김미애 위원 그러면 저에게도 같은 기회를 주십시오.

○강선우 위원 아니, 저보다 더 많이 하셨어요.

○김미애 위원 아니, 같은 기회를 주십시오.

○강선우 위원 양 간사 간에 횟수는 똑같이 주십시오.

○위원장 박주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 간사분들은 저하고 오늘 오전에 거의 1시간 가깝게 말씀을 나누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약속드린 것도 있고 또 양 간사 간에 상당히 원칙적 측면에서는 많이 접근이 됐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신뢰가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신뢰에 기반해서 상임위 운영을 해서 아까 약속드린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양당 간사님들께서는 톤 조절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마지막으로 최보윤 위원님과 이수진 위원님이 한 말씀씩 하는 걸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보윤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최보윤 위원 일단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신뢰와 그다음에 우리가 양당에서 함께, 양당뿐만 아니라 지금 같이 계신 다른 야당 위원님들도 함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의견을 함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이 정치의 영역이라든지 또 혹시 정부와 예전 국회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지금 하는 것은 환자의 입장과 그리고 의사가 떠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간호사님들에 대한 입장에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큰 신뢰, 국회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동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무엇보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미 전전 회의 때 이 부분은 빨

리 논의하자고 해서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계속 논의를 이어 가는 것과 그다음에 우리가 어느 정도의 시급성을 생각해서 하는 부분을 고려했을 때 시급성을 한다고 공통적으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지금에 와서 더 신중 논의 부분을 얘기를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예전 논의를 또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공백의 사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절실히 한다면 신뢰의 부분에서 어떤 타임 스케줄 없이 그냥 신뢰의 부분이니까 그대로 하겠다라는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다른 당 위원님들과 그리고 또 위원장님께 간곡하게 호소드리면서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협치하는 모습을 이번 위원회에서 꼭 보여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계속 이런 부분들을 논의하는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는 국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저도 만성질환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계속 논의한다기보다는 결단의 시점이 필요하고 그게 어떤 정쟁이나 정부나 이런 부분을 얘기하지 않고 의료 공백을 지키고 계신 의료인들 그리고 파업을 앞두고 있어서 불안에 떨고 있는 환자와 국민들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타임 스케줄이라도 적어도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주민 사실은 간호법이 21대 국회 때 통과됐을 때 제가 더불어민주당의 원내수석이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애를 썼었어요, 통과시키려고. 정말 안 돼서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의 직상정, 직회부 절차까지 밟도록 해 가지고 간신히 올린 법안입니다. 그게 거부됐어요. 그때 당시의 감정을 떠올리면 솔직히 사과라도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제가. 그 당시 상황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마치 없었던 것처럼 자꾸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면, 참 모르겠네요.

○최보윤 위원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박주민 현재 정부하고 그때 정부하고 똑같은 정부입니다.

○서영석 위원 반성부터 하세요, 반성부터.

○서미화 위원 사과부터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박주민 이수진 위원님 발언하시고 이것은 이 정도로 해서 정리하는 걸로 하지요.

○이수진 위원 어렵게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그 당시 보건복지위원회가 아니었지만 다른 상임위에 있으면서도 현장에서 울부짖던, 아스팔트 위에서 울부짖고 쓰러지고 국회 앞에서 목소리 내고,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어렵사리 통과시켰는데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했지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저는 대통령의 사과가 선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짜 간호법이 필요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정부 당국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싶은 의지가 있다라면 대통령께서, 지금 전담간호사 업무 빼놓고 나머지는 21대 국회에 통과시킨 간호법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내용이 다를 것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법 내용도 ‘전공의의 업무 떠넘기기’ 이렇게 정리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법안소위에서도 심도 깊게 논의를 두 차례에 걸쳐서 했었던 것이고요. 앞으로도

그런 논의들을 잘해서 저도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라는 바인데 오늘 제가 얘기를 가만히 들어 보면 마치 민주당이 뭘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프레임을 만들어서 저도 매우 유감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바로 잡을 게 있는데 보건의료노조가 29일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사립대병원이나 국립대병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61개 병원들은 특수목적병원이라든지 지방의료원인데 이것 역시 정부가 지난 코로나 이후에 제대로 지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 문제들이 실제로 고용 불안부터 시작해서 간호사·의사들이 떠나가고 사실 병원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 있게 조치하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분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또 의료대란·의료 공백으로 인해서 그 책임이 현장의 보건의료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책임을 질 것이냐, 이거에 대한 답을 내놔라, 이게 첫 번째 요구입니다.

그리고 PA 간호사라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법적 제도라든지 제도개선이라든지…… 그리고 사실 수당이라든지 업무의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법을 통해서 만들어지길 바라는 바지요. 그래서 선이 뭐고 후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구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분들이 파업을 하시겠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바로 공공의대법이라든지 필수의료라든지 지역의료 이거 법 빨리 개정해서, 제정하든지 개정해서 제대로 의사들을 중원하고 수급해야 되지 않냐 이거에 대한 요구입니다. 제대로 저희가 내용들 파악을 해서 보건복지부가 제대로 일하게끔 만드는 게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포함해서, 간호법도 굉장히 중요하고 빠르게 해소를 해야 되지만 이런 문제들까지도 피하지 마시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민 이 정도로 하고 의사일정 진행하도록……

○서명옥 위원 저도……

○김미애 위원 기회를 주시려면 똑같이 한 번씩 주시고 아니라면 말고요.

○서미화 위원 진행하시지요. 정리하고, 그만하고 진행합시다.

○위원장 박주민 제가 욕먹을 각오로……

○남인순 위원 계속합시다, 계속해요. 한마디씩 다 해.

○서미화 위원 나도 해야 돼.

○소병훈 위원 그러면 다 하는 걸로 하세요. 그래도 이렇게 자꾸……

위원장님이 확실하게 하십시오.

○위원장 박주민 예, 제가……

○김예지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소병훈 위원 한 명이라도 더 하면 여기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민 이렇게 정리를 하지요.

○소병훈 위원 아니, 간사님들 둘이 나가서 다시 협의를 하면 되잖아요, 회의는 회의대로 하고. 두 분이 따로 그거는 말씀하세요.

○위원장 박주민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시겠지만 그

말씀을 다 하는 게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
1.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 가. 보건복지부 소관
 -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 다. 질병관리청 소관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60)
 3.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77)
 4.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88)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53)
 6.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14)
 7.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80)
 8.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89)
 10.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76)
 11.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11)
 12.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55)
 13.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93)
 14.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04)
 1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08)
 1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8.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93)
 19.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결핵예방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21)
 2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79)
 2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13)
 2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75)
 2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822)
 25.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900)
 2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76)

2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73)

2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9.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16)

3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97)

(10시47분)

○위원장 박주민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질병관리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부터 의사일정 제30항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30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결산과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각 의원실에 송부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 좌석의 노트북에도 해당 자료가 탑재되어 있으니까 안건의 세부 사항은 좌석의 노트북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수진 소위원장님께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이수진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8월 21일 회의를 개최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관하여 심도 깊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질병관리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을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고 국회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정부 측에 주의 35건, 제도개선 159건 등 중복 5건을 제외한 총 189건의 시정요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소관 기관별로 주요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예산 미반영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무단 전용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 하나의 계약을 여러 세부사업이나 회계와 기금에서 분할하여 추진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할 것,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재정 전망의 연구방법론을 공개할 것 등 총 10건에 대하여 주의를 요구하였고, 저소득층 생계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취약 계층 보장성 강화 방안을 검토할 것, 노인일자리 유형별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공익활동형 일자리 사업기간을 연장할 것 등 총 126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말씀드리자면 과태료·과징금·가산금의 수납률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저소득계층 의약품 구입비 사업 대상 확대의 적정성을 검토할 것 등 총 4건에 대하여 주의를 요구하였고, 어린이 급식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참여형 마약류 예방교육 사업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객관적인 성과지표를 마련할 것 등 총 19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병관리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사업 수행 시 집행 가능성과 집행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집행하여 과다한 이·전용 및 법률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이월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등 총 21건에 대하여 주의를 요구하였고,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의 예산편성 추이와 집행 관리에 대하여 지속 점검하고 신규 설립된 재단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할 것

등 총 14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한편 의료급여 수급자의 필수적 의료이용 접근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정률제의 재검토를 포함한 합리적 의료이용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등 부대의견 16건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부대의견은 나눠 드린 소위 자료를 참고해서 읽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늦은 시간까지 심사보고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선우 소위원장께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강선우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강선우 위원입니다.

우리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34건의 법안을 심사한 결과 3건은 원안, 2건은 수정안으로 채택하고, 2건은 통합 조정하여 1건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서명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치료보호 및 치료감호가 종료된 사람의 사회 복귀와 재활을 위한 사후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치료보호기관의 시설과 인력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치료감호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부칙의 시행일을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제정법률안 2건은 복지부 소관 3개 법률과 식약처 소관 5개 법률에 대해 사회복지사 등의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도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식약처 소관 법률안은 의료기기법 개정사항 중 경미한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차상위계층 등의 조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한 용어를 통보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사회복지사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사회 복지법인 및 시설의 운영자가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 제재 수단을 별금에서 과태료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가 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으로 완화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법안심사제1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애 소위원장께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이 오늘 다 검은색 옷을 입고 오셨네요.

○소위원장 김미애 법안심사제2소위원장 김미애 위원입니다.

우리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48건의 법안을 심사한 결과 4건은 원안, 4건은 수정안으로 채택하고 9건은 통합 조정하여 4건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과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결핵 예방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지자체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통보로 용어를 변경하고 조례 위임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요양보호사 등의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도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본 의원과 강선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희귀질환 진단 및 치료와 관련하여 현재 의약품에 한정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대상을 의료기기와 식품으로 확대하고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질병관리청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등에게 자료제출 등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에 의료기관의 희귀질환 등록 통계 자료제출에 소요되는 비용 보조의 구체적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박희승 의원, 신성범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농어업인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2024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인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7년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예지 의원, 한병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장애인 관련 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대상기관을 확대하는 한편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 거부의 정당한 사유를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남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동통신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에게 점자 자료 등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여 장애인 차별을 예방하고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보 제공의 방법에 쉬운 말과 그림을 추가하고 시행일을 연장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장종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업무 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의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으로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까지 비용 지원이 가능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소병훈 의원, 이수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노인의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와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무인정보단말기와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에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편의 제공을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신성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임을 확인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도용 또는 폭행·협박 등 적극적인 방법에 의한 법 위반행위 유발로 불가피하게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일부 목욕장 영업자의 경우에도 연령 확인 과정에서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박희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험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인 국내 체류 외국인 등에 대해서도 내국인에 대한 체납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되 국내 체류 외국인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규정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데 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체납한 경우 이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등 국내 체류 외국인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규정해야 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법안심사제2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민 수고하셨습니다.

결산과 법안심사에 애써 주신 세 분 소위원장님과 각 소위의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와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요. 오전에 사실 다른 이야기 하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간사님들 간에 발언 시간에 대한 협의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할까요? 통상적인 예에 따라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언 시간은 5분입니다.

있으십니까, 발언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질병관리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시정요구사항과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법안 의결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축조심사와 비용추계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하는 일부개정법률안들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66조제3항 단서 및 제79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수정안 또는 대안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도록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6항 및 제7항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12항 및 제13항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15항 및 제16항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결핵예방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2항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26항 및 제27항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결산과 법안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결산의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과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의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과 법률안 의결에 따른 정부 측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3회계연도 보건복지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의 건과 총 18건의 소관 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수진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님과 위원님, 강선우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장님과 위원님, 김미애 법안심사제2소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제시하신 고견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국민의 세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도 있는 법안 심의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을 통해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청소년임을 알지 못한 선량한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안정적 노후소득 확보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산과 법안의 심의 의결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보건복지부 직원 모두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보다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장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과 법안을 심사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조속한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 의결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4건의 법안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도록 후속 절차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은 식의약 정책이 더욱 도약하는 계기로 삼겠으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의해 주신 이수진·강선우·김미애 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주민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영미 질병관리청장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장 지영미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3년 회계연도 질병관리청 소관 결산과 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에 의결하여 주신 희귀질환관리법 개정을 통해 희귀질환 관리를 위한 의료기기와 특수식의 생산 및 판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희귀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결핵예방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정비를 통해 결핵 환자 의료조치 시 수수료 또는 의료비에 대한 조례 위임 범위를 확대하여 자치입법권 강화와 지방자율성 제고에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병관리청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소중한 제언들을 잘 새겨서 감염병, 만성질환 등 건강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 여러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여러분, 보좌 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간호법 관련돼서 많은 말씀 주셨는데요. 간호법은 그동안의 역사도 있고 또 여러 사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이해관계에 있는 단체들이 얹혀 있는 법입니다. 좋은 내용으로, 그렇지만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다 힘을 모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양당 간사님들은 그것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석 위원(22인)

강선우 김남희 김미애 김선민 김예지 김윤 남인순 박주민 박희승 백종현
서명옥 서미화 서영석 소병훈 안상훈 이개호 이수진 이주영 장종태 전진숙
최보윤 한지아

○청가 위원(2인)

백혜련 추경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전문위원 정경윤
전문위원 연광석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제1차관 이기일
제2차관 박민수
대변인 정호원
기획조정실장 김혜진
사회복지정책실장 이스란
인구정책실장직무대리 임호근
보건의료정책실장 정윤순
의료개혁추진단장 정경실
정책기획관직무대리 양윤석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오유경
차장 김유미
기획조정관 우영택
마약안전기획관 채규한
질병관리청
청장 지영미
차장직무 대리 이상진

【보고사항】**○의안 회부****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16. 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8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16. 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12)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2024. 8. 16.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19)

이상 3건 8월 19일 회부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19. 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2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19. 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25)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19. 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26)

취약청년 자립지원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2024. 8. 19.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44)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19. 백종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5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19. 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59)

이상 6건 8월 20일 회부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20. 백종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60)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20. 백종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63)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20. 백종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6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20.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6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20. 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76)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20. 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7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20. 백종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05)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20. 백종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0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20. 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1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20. 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14)

이상 10건 8월 21일 회부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21. 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19)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21. 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2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21. 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23)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4. 8. 21. 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25)

이상 4건 8월 22일 회부됨

위기청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4. 8. 22. 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64)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22. 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6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22. 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6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22.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8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22.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84)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22. 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86)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22. 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87)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22. 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88)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22. 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89)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22. 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9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22.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92)

이상 11건 8월 23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한경국립대학교 공공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2024. 8. 16. 윤종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15)

8월 19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의안 철회**장애인권리보장법안**

(2024. 8. 7. 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12)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2024. 8. 7. 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13)

이상 2건 8월 22일 발의자 철회 요구

○예비심사기간 통보

2023회계연도 결산

(2024. 5. 31. 정부 제출)

8월 20일 의장으로부터 예비심사기간이 9월 2일 09시 30분까지로 확정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음

○행정입법 제출

구분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훈령	예규	고시
보건복지부	1	-	1	1	-	6
식품의약품안전처	-	-	-	-	-	2